



제 309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김지훈(국)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안 제 5조)
- 나.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할수 있고, 꿀벌 보호를 위해 말벌 방제 및 퇴치 사업 규정 마련.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제6호)
- 다.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규정 마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농축산지원과
- 라. 입법예고 : 2025. 1. 24. ~ 2025. 1. 31. (7일간)
-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및 말벌 등의 증가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대책과 양봉산업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 말벌 방제 및 퇴치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없는 점을 감안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대상을 명확히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꿀벌을 보호·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이미 농촌진흥법 제16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양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원사업, 경기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양봉 관련 교육 등 기편성된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부개정조례 신설로 인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사항임

※ 양봉산업 관련 사업 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 사업명 | 예산액 | 지원내용 |
|------|-----------|----------------------|---------------------------------------|
| 2024 | 양봉산업 육성사업 | 114,380 (도30 시70) | 양봉전용사료, 간이양봉창고, EPP벌통, 말벌퇴치장비 등 |
| 2025 | 양봉산업 육성사업 | 113,100 (도30 시70) | 양봉전용사료, 저온저장고, 여왕벌, CCTV, 상차용리프트 등 |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